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원의 명칭은 사단법인 보험개발원(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요율의 산출과 보험상품의 개발, 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보험관련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통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보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법인격) 본원은 사단법인으로 한다.

제 4 조 (사무소) 본원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부설기관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둘 수 있다.

제 2 장 사 업

제 5 조 (사업) ① 본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보험요율의 산출·검증 및 제공
2. 경험생명표 및 위험율의 작성과 보정
3. 산출한 보험요율의 신고
4. <삭제 2000.11.3>
5. 보험요율과 보험에 관련된 정보·통계·자료의 집적·관리·분석·작성 및 제공
- 5의2. 보유정보의 활용을 통한 자동차정보 제공사업
6. 보험상품의 개발, 보험요율·약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작성
7. 보험회사의 요청에 의한 기초서류의 확인
8. 보험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
9. 위험도 측정 및 계약인수조건의 연구
10. 정부기관, 보험회사, 기타 보험관계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1. 보험전산망 관련업무

11의2. 자동차강제보험 가입관리전산망 구축관리사업

12. 보험과 자동차기술에 관한 직업능력개발 교육

13. 기타 본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본원이 산출하는 보험요율의 보험종목은 다음과 같다.

1. 생명보험

2. 손해보험

가. 화재보험

나. 해상보험

다. 자동차보험

라. 보증보험

마. 특종보험

바. 장기손해보험

3. 연금보험

4. ~ 6. <삭제 2000.11.3>

7. 기타 본원이 정하는 보험종목

③ 본원은 제1항 각호의 사업외에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보험관련 컨설팅·연구용역 수탁에 관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제 6 조 (보험요율의 산출과 검증) ① 본원이 산출하는 보험요율은 객관적·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부당하게 차별적인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② 보험요율의 산출과 검증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7 조 (서류열람) 본원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보험요율산출의 기초가 되는 서류의 열람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에 응한다.

제 8 조 (보험요율서의 비치) 본원은 산출한 보험요율서를 항상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상담에 응한다.

제 9 조 (보험요율의 공고) 본원의 원장은 본원이 산출한 보험요율을 이해관계인에게 주지시키고 그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경제신문에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산출한 보험종목 및 내용

2. 산출한 보험요율의 인가신청 예정일자

3. 산출한 보험요율의 내용을 비치한 사무소
4. 기타 참고사항

제 10 조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보험요율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2주일이내에 서면으로 본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원에 접수된 의견은 이를 종합하여 보험요율의 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조 (공청회) ① 본원은 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전 또는 산출한 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3 장 사 원

제 12 조 (사원의 자격) ① 본원의 사원은 정사원, 준사원 및 특별사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사원은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하여 허가받은 보험회사로 한다.

③ 준사원은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하여 허가받은 보험회사로서 재보험사업만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 하며, 특별사원은 보험업법 이외의 다른 법에 의한 보험업 또는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단체로 한다.

제 13 조 (가입) ① <삭제 2001.4.23>

② 본원에 사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사원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추가로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원에 사원으로 가입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총회에서 정한 ‘가입비 산출 및 운영기준’에 의한 가입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1. 가입비는 본원이 보유한 순자산과 무형자산중 정보·통계자료를 대상으로 평가
2. 가입비는 사원가입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말을 기준으로, 순자산은 대차대조표에 의해 평가하며, 무형자산은 과거 투입원가를 기초로 평가하되 현재가치로 환산후 자료의 효용가치를 고려하여 상각

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평가결과를 보험업법령 및 본원의 서비스이용 가능성에 따라 허가받거나 영위하는 보험종목별로 구분
4. 제3호에 의한 보험종목별 평가결과를 사원가입 직전의 해당 보험종목별 사원사수로 나누어 적용하되, 과거 투입원가에 의한 평가가능성과 서비스범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저수준을 정하거나 다른 보험종목과 비교하여 수준 조정 가능

제 14 조 (탈퇴 및 제명) ① 사원은 언제든지 본원을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사의 해산 또는 보험업 전부의 허가가 취소된 사원은 본원을 탈퇴한 것으로 본다.
- ③ 사원은 보험요율에 관한 법령·규정·본원의 정관 기타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 또는 기타 제재를 할 수 있다.
- ④ 본원을 탈퇴하거나 제명된 자는 총회의 승인없이 본원의 사원으로 재가입할 수 없다.
- ⑤ 탈퇴·제명 또는 본원의 사원이 아닌 보험회사는 본원이 산출한 보험요율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총회의 승인과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본원을 탈퇴하거나 제명된 자는 본원의 자산에 관하여 청구권이 없다.

제 15 조 (정관등의 준수의무) 사원은 본원의 정관·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6 조 <삭제 2000.11.3>

제 17 조 <삭제 2000.11.3>

제 18 조 (자료제출 요구 및 통지) ① 사원은 본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원이 요청하는 각종 정보·통계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본원이 보험요율을 산출하여 신고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요청한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 조 (경비의 출연) 사원은 총회에서 별도로 정할 때까지 본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여야 하며 출연할 금액의 총액, 분담방법 및 납입시기 등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 20 조 (자금차입 등) 본원은 그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자금을 차입하거나 출연할 경비를 전도 요청할 수 있다.

제 4 장 임원 및 기구

제 21 조 (임원의 수 및 선임방법) ① 본원은 2인의 상임이사(원장 1인, 부원장 1인)와 8인의 비상임이사, 2인의 비상임감사를 둔다.

②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상임이 아닌 이사는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자(이하 “공익대표”라 한다), 사원을 대표할 수 있는 자(이하 “사원대표”라 한다) 중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선임한다.

1. 공익대표인 이사

가. 계약자대표 1인

나. 언론계 대표 1인

다. 학계 또는 연구기관 대표 1인

라. 법률전문가 1인

2. 사원대표인 이사

가. 생명보험 정사원 대표 2인

(선임예정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본원의 운영경비 분담 비율이 큰 상위 3개사 중에서 1인, 그 외의 회사 중에서 1인)

나. 손해보험 정사원 대표 2인

(선임예정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본원의 운영경비 분담 비율이 큰 상위 4개사 중에서 1인, 그 외의 회사 중에서 1인)

③ 원장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선임하여 구성하는 원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원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규정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한다.

④ <삭제 2005.10.5>

⑤ 감사는 총회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선임한다.

1. 정사원의 감사 중에서 1인

2. 회계전문가 1인

⑥ <삭제 2011.3.28>

제 21 조의 2 (집행임원) ① 본원에 비등기 집행임원을 4인 이내로 둘 수 있다.

② 집행임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 21 조의 3 (고문) ① 본원의 운영에 관한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제 22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상임이 아닌 임원의 임기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자를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후임 원장을 선임하기 전에 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원장 선임시까지 현 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 23 조 (상임이사의 자격) 본원의 상임이사는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선임하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4 조 (상임이사의 직무) ① 원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 및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원의 업무를 분장한다.

③ <삭제 2010.11.25 >

④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4 조의 2 <삭제 2010.11.25>

제 25 조 (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원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제 26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본원의 회계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7 조 (대표권의 제한) 상임이사의 이익과 본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상임이사는 본원을 대표하지 못한다.

제 28 조 (대리인의 선임) 원장은 이사 또는 직원중에서 본원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 29 조 (보수위원회) 본원 상임이사와 집행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보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30 조 (기구 및 직원) ① 본원에 부설기관으로 자동차기술연구소를 두며 부설기관을 포함한 본원의 기구 및 직제와 직원의 보수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본원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③ <삭제 2010.11. 25>

제 31 조 (전문위원회) ① 본원의 주요업무에 관한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32 조 (이사의 소집) ① 이사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원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7일전에 회의목적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또는 구두로서 통지할 수 있다.

제 33 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험요율의 산출 및 검증에 관한 사항
2. 경험생명표 작성 및 보정업무에 관한 사항
3. 보험상품 개발 및 약관 작성에 관한 사항
4. 주요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규칙·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중요한 사항

제 34 조 (의결방법)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 35 조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원장은 이사회의 안건중 이해관계가 있는 자

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 36 조 (의사록)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상임이사가 기명 날인하고 본원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37 조 (상임이사회) ① 본원은 이사회的高效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 의결에 갈음할 상임이사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회는 원장, 부원장으로 구성한다.

제 6 장 총 회

제 38 조 (총회) ① 총회는 정사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③ 준사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39 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년 1회 매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2월이내에 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사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원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7일전에 회의목적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구두로써 통지할 수 있다.

제 40 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본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본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6. 기타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41 조 (의결방법) ① 총회의 회의는 정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원의 해산과 사원의 제명에 있어서는 제명대상

사원을 제외한 전원이 출석하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의 변경은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본문의 경우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0조의 의결사항중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단일업종에만 국한된 의안에 대해서는 관련된 당해 업종의 회원만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 42 조 (의사록)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상임이사가 기명 날인하고 본원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7 장 회 계

제 43 조 (회계연도) 본원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4 조 (운영경비) 본원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출연과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서 충당한다.

제 44 조의 2 (적립금) 제13조 제3항의 가입비는 별도로 적립하며 동 적립금은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출연하는 본원 경비의 대체 또는 특수목적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제 8 장 해 산

제 45 조 (해산) 본원은 총회의 의결 및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으며, 잔여재산의 처분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9 장 정관변경

제 46 조 (정관변경의 효력) 이 정관의 변경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회계년도에 관한 경과조치) 본원의 제1차 회계년도는 설립등기일로부터 1990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임원의 선임등에 관한 특별조치) 본원의 초대임원의 선임과 기구·직제 및 제1차 회계년도 예산에 관한 사항은 제21조, 제30조, 제33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기인총회에서 이를 선임 또는 의결한다.

제 4 조 (업무 및 재산등의 승계) ① 본원은 사단법인 한국손해보험요율산정회 (이하 “요산회” 라 한다.)의 모든 업무 및 재산과 그에 따른 권리의무를 본원 설립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승계한다.
② 본원의 설립일 당시의 요산회 직원의 신분과 그에 대한 권리의무는 본원이 이를 승계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2. 6. 18 재무부장관 인가)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3. 5. 31 재무부장관 인가)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3. 6. 4 재무부장관 인가)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5. 4. 6 재정경제원장관 인가)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5. 11. 25 재정경제원장관 인가)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1998. 10. 2 금융감독위원회 인가)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1999. 4. 6 금융감독위원회 인가)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2000. 11. 3 금융감독위원회 인가)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001. 4. 23 금융감독위원회 인가)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2002. 5. 8 금융감독위원회 허가)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2004. 8. 2 금융감독위원회 허가)

제 2 조 (기 가입한 사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 시행일전 본원에 기 가입한 사원(보증보험만을 영위하는 사원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04회계년도 말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 (보증보험만을 영위하는 사원에 대한 특례) 이 정관의 시행일전 본원에 기 가입한, 보증보험만을 영위하는 사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른 보험종목을 허가받거나 영위하더라도 제13조 제3항에서 정한 가입비납입의무를 면제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2005. 10. 5 금융감독위원회 허가)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2007. 12 .7 금융감독위원회 허가)

제 2 조 (전무이사의 명칭변경에 관한 특례) 이 정관 시행일 직전까지 전무이사로

재임하는 자는 이 규정의 시행일에 부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 전까지 전무이사로서 재직할 기간과 통산한다.

제 3 조 (상무이사의 신분변경에 관한 특례) 이 정관 시행일 직전까지 상무이사로 재임하는 자는 이 규정의 시행일에 집행임원(상무)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 전까지 상무이사로 재직할 기간과 통산한다.

제 4 조 (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의 시행일 현재 다른 규정·요강·기준·지침 등 모든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전무이사”와 “상무이사”의 문구는 일괄하여 각각 “부원장”과 “상무”로 개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010. 2. 23. 금융위원회 허가)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부설 보험연구원의 독립법인화를 위해 신설되는 비영리사단법인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2010. 11. 25. 금융위원회 허가)

제 2 조 (부설 보험연구원 관련규정의 폐지 등) ① 내부 제규칙·규정중 다음 각호의 규정은 폐지한다.

1. 보험연구원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2. 보험연구원운영규정
3. 특수임용계약직원 인사고과요강
4. 보험연구원 특수임용계약시행규정
5. 능률제고 특별상여금지급기준

② 이사회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상임이사(원장, 부원장, 보험연구원장)와 비상임이사(정관 제21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보험연구원장을 포함한다)’를 ‘상임이사(원장, 부원장)와 비상임이사’로 한다.

제10조의 ‘보험연구원장(정관 제21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보험연구원장을 포함

한다) 및 부원장' 을 '부원장 및 집행임원' 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제규칙·규정 이외의 내부 제규칙·규정중 보험연구원 또는 보험연구원장과 관련된 규정은 본 정관개정으로 일괄 삭제한다.

제 3 조 (도서의 관리 및 자료실 이용) 도서 및 자료실의 관리는 제1조의 신설법인에 두고 공동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와 관련한 세부내역은 신설법인과 협약으로 정한다. 다만, 회사 이전 등으로 도서 및 자료실의 공동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합의로 도서의 소유관계를 다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3월 28부터 시행한다.

(2011. 3. 28 금융위원회 허가)

제 2 조 (집행임원 삭제관련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전 임명된 집행임원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3 조 (이사회규정 개정) 이사회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부원장 및 집행임원' 을 '부원장' 으로 한다.

제11조 제1호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만, 보험요율의 산출 및 검증관계 규칙, 규정과 이사회규정, 원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집행임원운영규정, 추가적인 예산부담을 수반하는 직제관련 규정은 제외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013. 3. 28. 금융위원회 허가)

제 2 조 (회계연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016. 1. 21. 금융위원회 허가)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017년 3월 15일 금융위원회 허가)

제 2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전까지 집행임원운영규정에 따라 집행임원으로 재임하는 자는 이 정관의 시행일에 이 정관에 의해 집행임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 전까지 집행임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과 통산한다.